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642

발의일자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장규권 의원

1. 제안이유

관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빈집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빈집정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빈집정비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- 바. 빈집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- 사. 홍보 및 지도·감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아.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, 제5조, 제11조 등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4. 11. 15. ~ 11. 21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빈집"이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. 다만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.
- 2. "빈집정비사업"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.
- 제5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(이하 "빈집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빈집정비의 기본방향
 - 2.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
 - 3.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
 - 4.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
 - 5. 실태조사 결과
 - 6.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
 - 7.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
 - 8.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

시할 수 있다.

- 제6조(빈집정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.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
 - 2.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(공용 주차장, 쉼터, 운동시설, 공용 텃밭,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)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 한 빈집
 - 3.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7조(빈집의 활용)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.
 - 1. 고령자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및 성별·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
 - 2. 도서관, 마을회관, 주민운동시설, 공용주차장,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
 - 3. 관리사무소, 경비실, 보안·방범·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
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- 제8조(빈집의 안전조치)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·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(이하 "안전조치"라 한다)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.
 - 1. 건물의 벽체, 기둥, 지붕, 담장 등 노후・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・보강
 - 2. 화재발생 요인 차단
 - 3.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
 - 4.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 - 5.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
 - 6.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
 -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- 제9조(홍보)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·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 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·관리와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[시행 2024, 2, 15.] [법률 제19225호, 2023, 2, 14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 4. 2 3., 2021. 7. 20., 2021. 10. 19.>

- 1. <u>"빈집"이란</u>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<u>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등"이라 한다)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. 다만,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.</u>
- 2. "빈집정비사업"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- 제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시장·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(이하 "빈집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 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·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4. 23., 2021. 4. 13.〉
- 1. 빈집정비의 기본방향
- 2.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
- 3.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
- 4.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(이하 "지방도시 계획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시장·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〈개정 2022. 2. 3.〉
- ⑤ 시장·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〈신설 2019. 4. 2 3.〉
- 1.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
- 2. 노후·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
- 3.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
-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〈신설 2019. 4. 23.〉
- 제5조(빈집등 실태조사) ① 시장·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(이하 "빈집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·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4. 13.〉
- 1. 빈집 여부의 확인
- 2.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
- 3.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
- 4.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
- 5.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시장·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시장·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21. 4. 13.〉
- ⑤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 1. 4. 13.>
- 제11조(빈집의 철거 등) ① 시장·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, 철거 등(이하 "철거등"이라 한다)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(이하 "지방건축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1. 4. 13.〉
- 1. 붕괴·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
- 2.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
- 4.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
- ②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4. 13.〉
- ③ 시장·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,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.

- ⑤ 시장·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.
- 1.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
- 2.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(所在不明)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
- 3.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
- ⑥ 시장·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,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

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[시행 2024. 3. 19.] [대통령령 제34322호, 2024. 3. 19., 일부개정

- 제2조(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)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"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
- 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(이하 "공공임대주택" 이라 한다)
- 2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 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「주택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
- 3. 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「주택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
- 4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준주택. 다만,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 텔은 제외하다.
- 5.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